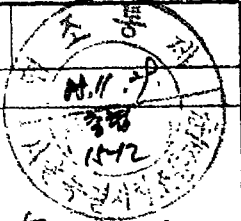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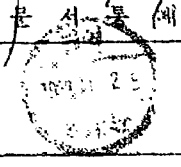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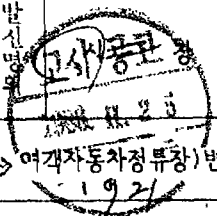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6)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0- <i>489</i>	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	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구.			
시행일자	88. 11. <i>24</i>			
보조 기 관	도시계획국장 <i>전 결</i>	협 조 기 관	법무담당관 <i>김기호</i> 협조통제관 <i>과장 김</i> 지적과장 <i>수</i>	
	시설계획과장 <i>김</i>			
	가로계획2과장 <i>김</i>			
기안책임자	나성수			발 송 인
경 유 수 신 참 조	각 안 참 조		발 신 번호	
제 목	도시계획시설(화물자동차정류장, → 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			
(제1안) : 내부결재				
1. 교기30310-789('85.9.10), 진유중88064('87.12.28), 우리시 방침 계0489호('88.4.14) 및 교기33100-796('88.10.13)의 관련입니다.				
2. 위호와 관련 교통국 및 (주)진로유통 대표 홍 순근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(화물, 여객자동차정류장)결정 및 변경 결정 요청 받은 안건과, 우리시 방침으로 정한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코져 합니다.				
3. 본 건은 우리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('85.11.29)에서 심의 가결 된 사안입니다.				
		2432		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관련도서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도시시설계획과장

제목 : 같음.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화물, → 여객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별첨과

같이

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보고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화물, → 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및지적승인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, 제13조.

라. 게재내용 : 별첨 고시문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4안)

수신 : 서초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1. 귀구관내 서초동 1446-1일대 도시계획시설(화물,→여객자동차정류장)에대

하여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기 통보하니 도시계획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(계5안) 1/67 |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같음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화물,여객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

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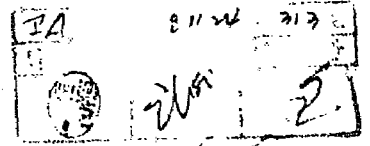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교통기획과장, 지적과장

2434

고

시



서울특별시고시 제 호

도시계획시설(화물 → 여객자동차정류장)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화물, 여객자동차정류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면은 관할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11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화물 → 여객자동차정류장)변경결정^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m ²)	비 고
기정	화물자동차정류장	서초구 서초동 1446-1일대	48,780	
구분	"	"	0	폐 지
신설	여객자동차정류장 (시외)	서초구 서초동 1446-1일대	48,780	

나. 도면 : 관할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